

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백운정 민법 1차 문제집 (제7판 정오표)

페이지	변경부분	수정
333p	정답 01 ㉓	01 ㉓, ㉕
334p	정답 해설 ㉕ 해설	<p><b>시효이익 포기</b>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, <b>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</b>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<b>효과외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</b>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. 이러한 효과외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.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, <u>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</u>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(대판(전) 2025. 7. 24. 2023다240299). 소멸시효 완성 후 <b>중단으로서의 채무승인을 넘어 불리한 법적 결과를 의욕하는 효과외사가 있어야</b> 시효이익의 포기를 할 수 있다.</p>
335p	정답 해설 ㉕ 해설	<p><b>시효이익 포기</b>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, <b>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</b>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<b>효과외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</b>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. 이러한 효과외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.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, <u>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</u>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(대판(전) 2025. 7. 24. 2023다240299). <b>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"추정 법리"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,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는 개별적이고 엄격한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</b>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. 이로 인해 추정 법리를 사용한 법적 판단이 아닌 개별 사건마다 세부적인 사정 고려와 구체적 사실 심리를 통해 시효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.</p>
335p	정답 04 ㉔	04 ㉔, ㉕
338p	정답 해설 ㉓ 해설	<p><b>시효이익 포기</b>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, <b>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</b>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<b>효과외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</b>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. 이러한 효과외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.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, <u>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</u>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(대판(전) 2025. 7. 24. 2023다240299). 따라서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,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.</p>
339p	정답 01 ㉕	01 ㉓, ㉕

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백운정  
합격이 보이는 민법 조문&기출 (제5판 정오표)

p. 62 21

반사회적 해위 ⇒ “행위”로 수정해 주세요

p. 114 제171조

1.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대한 “채권의 참가”  
⇒ “채권자의 참가도”로 수정

p. 118 제184조

정답 04 ○ ⇒ “×” 로 수정

정답 05 ○ ⇒ “×” 로 수정

p. 120 10

물권의 객체는 “물권”에 한정하지 않는다.  
⇒ “물건”으로 수정